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
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
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과실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하고,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891호, 2025. 4. 1. 공포, 2025. 10. 2. 시행)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과실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고,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(별표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차목까지로 한다.

별표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43조제2 항제2호	75	150	250
--	------------------	----	-----	-----

별표 제2호자목(종전의 아목) 근거 법조문란 중 “제2호”를 “제3호”로 한
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615